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 VIP의 은퇴준비,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이 함께합니다.

## 01. 가입대상 확대

- 사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력이 있는 고객,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고객에 대한 가입심사가 완화되었습니다.

## 02. 투자와 연금 기능의 결합

- 장기투자과 간접투자의 장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고객에 맞는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고, 노후설계자금을 활용하여 고객의 경제상황에 맞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03. 최저사망보증기능

- 연금개시 전 사망시에는 최저사망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최저보증합니다.
- ※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25%/12와 보험료 총액의 0.3%/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 보험료총액대비 보증비용은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부과합니다.

## 04. 여유자금 추가납입

-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여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수령액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 ※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 05. 유연한 보험료납입

- 납입종료(퇴직, 폐업, 장기 요양시), 납입일시중지, 납입중지 기능을 활용하여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료납입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본문 참조

## 06. 조기연금개시

- 조기연금개시를 활용하여 가입 후 7년 이후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 ※ 회사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 07. 자동인출서비스

- 자동인출서비스를 통해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08.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9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가장 좋은 생명보험사,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연맹은 매년 회사별 안정성과 소비자지향성, 건전성, 수익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좋은 생명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좋은 생명보험사'에 2010년부터 9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 01

## 상품안내

## 가입안내

1. 보험종류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2.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
3. 보험가입조건

보험종목	적립형
보험료 납입기간	5/7/10/12/15/20년납, (연금지급개시나이-7)세납
가입나이	만 15세 ~ 70세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30만원 이상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이내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0세

- ※ 납입완료 후 연금지급개시일까지 5년납의 경우에는 최소 5년, 5년납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 7년의 거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 (연금지급개시나이-7)세납의 납입기간은 5년납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단, 기본보험료는 1구좌 기준 100만원 이하로 하여 구좌 단위로 운영합니다.

## 지급기준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1구좌 기준)
고도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01

# 상품안내

## 지급기준

### 연금지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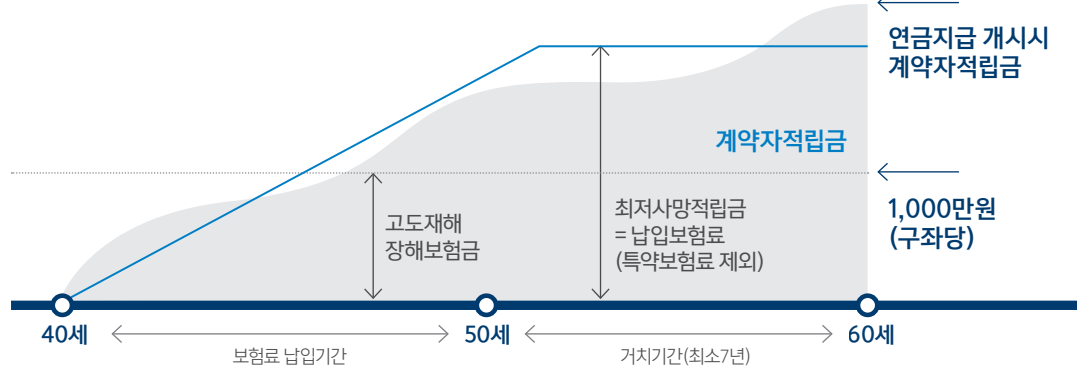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액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보증기간 : 정액형 - 10/15/20년, 100세, 3% 체증형 - 10/20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단, 보증기간까지 보증지급)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 : 5/10/15/20년)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계산한 연금연액
상속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노후설계자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25%/12와 보험료총액의 0.3%/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최대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3% 체증형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체증기간은 보증기간(10/20년)과 동일합니다.

## 가입예시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남자 40세 가입, 10년납, 60세 연금지급개시



### 연금지급기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생존시 평생지급 (정액형: 10/15/20년, 100세 / 3% 체증형: 10/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지급 (5/10/15/20년)
상속연금	생존시 연금계약적립액의 이자지급 + 사망시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지급
노후설계자금	연금지급기간 동안 자유로운 자금인출

## 보험료 추가납입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이내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매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계약일 이후 5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일시중지시, 1회 신청당 12개월을 최고 한도로 하며, 최대 3회 신청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거치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며,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됩니다.

## 보험료 납입중지

계약일 이후 10년(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10년+납입일시중지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중지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종료

계약자는 아래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 기본보험료의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종료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 납입일시중지기간)가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퇴직
-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보험료 납입종료는 계약일 이후 5년 경과 후부터, 해지환급금이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종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까지 최소 7년(5년납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의 거치기간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며,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기간은 종료되고 계약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 상품안내

### 계약자적립금 인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인출금 총액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인출서비스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계약자적립금이 인출되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인출서비스는 1회 신청당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계약일 이후 2년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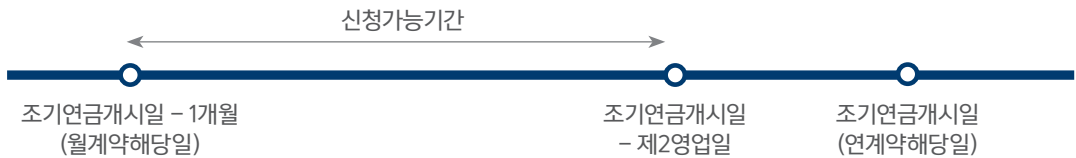
※ 단, 계약자적립금 인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더 이상 자동인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인출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조기연금개시에 관한 사항

아래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에 한해 최소거치기간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이 가능합니다(이하 '조기연금개시'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에 연금이 개시되며 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1)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조기연금개시시점)이 가입 후 7년(보험료 납입종료에 따라 납입종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
- (2) 조기연금개시시점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3) 신청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110% 이상인 계약

신청시기 : 「조기연금개시시점 1개월전 월계약해당일」부터 「조기연금개시시점 - 제2영업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계약자적립금은 신청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액 채권형 펀드로 이전하여 연금개시전 까지 운용됩니다.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최저연금적립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능 특약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 무배당 멀티정기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표준형)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무배당 멀티정기특약(해지환급금 미지급형/표준형)에 한하여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펀드선택 및 변경

기본보험료 납입펀드를 채권형 펀드를 포함하여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기안정채권형 펀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펀드별 기본보험료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80% 이상,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70% 이상,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50% 이상으로 합니다.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 투입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투입비율이 80% 이상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투입비율이 70% 이상
3.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투입비율이 50% 이상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펀드 적립금 이전시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며,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80% 이상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70% 이상
3.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50% 이상

## 펀드비율 자동조정

「연금지급개시일-3년」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25%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그밖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미만이고 「연금지급개시일-3년」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의 합계가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80% 미만인 경우: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80%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은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2년 이상이고 「연금지급개시일-3년」시점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의 합계가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70% 미만인 경우: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70%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은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01

# 상품안내

##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가정(순수익률: -1.32%)		2.50%가정(순수익률: 2.18%)		3.75%가정(순수익률: 3.43%)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0	326	216	60%	222	61%	225	62%
3년	1,080	980	864	80%	915	84%	934	86%
5년	1,800	1,633	1,495	83%	1,636	90%	1,690	93%
10년	3,600	3,267	2,988	83%	3,560	98%	3,794	105%
15년	3,600	3,245	2,762	76%	3,922	108%	4,443	123%
20년	3,600	3,224	2,552	70%	4,323	120%	5,206	144%

- ※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월납,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채권형펀드 100%, 단위: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이 차감(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계약자적립금 기준 보증비용만 반영)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연액 예시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가정(순수익률: -1.32%)			2.50%가정(순수익률: 2.18%)			3.75%가정(순수익률: 3.43%)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3,600			4,323			5,206			
예시이율(연복리)	1.00%	2.50%	2.50%	1.00%	2.50%	2.50%	1.00%	2.50%	2.50%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정액형)	10년 보증	120	153	153	145	183	183	174	221	221
	15년 보증	120	152	152	144	182	182	174	220	220
	20년 보증	119	151	151	143	181	181	172	218	218
	100세 보증	104	135	135	125	163	163	151	196	196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3% 체증형)	10년 보증	98	125	125	118	151	151	142	182	182
	20년 보증	85	111	111	103	133	133	124	160	160
확정연금	5년 확정	727	748	748	873	898	898	1,051	1,082	1,082
	10년 확정	372	397	397	447	477	477	538	574	574
	15년 확정	254	280	280	305	337	337	368	406	406
	20년 확정	195	223	223	234	267	267	282	322	322
상속연금 (상속준비금)		35	86	86	42	104	104	51	125	125
		(3,564)	(3,512)	(3,512)	(4,280)	(4,217)	(4,217)	(5,155)	(5,079)	(5,079)

- ※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월납, 10년납, 60세 연금개시, 채권형펀드 100%, 단위: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연금연액은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단, 2019년 9월 현재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및 2019년 9월 현재의 공시이율 연복리 2.50%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적립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0% 최저보증)로 하여 매 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 상기 예시한 금액은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일 때의 금액입니다.
-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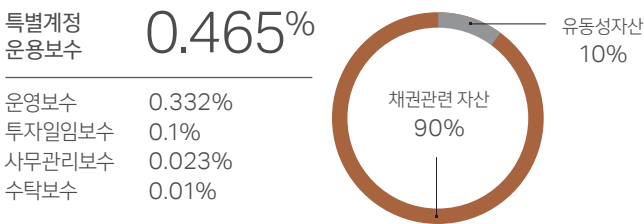
02

#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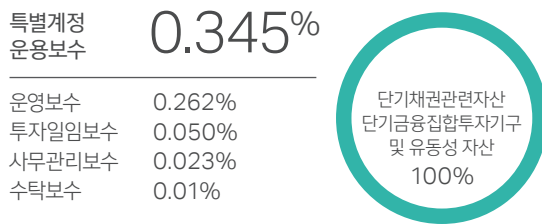
**민고 맡길 수 있는  
푸르덴셜이  
함께 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은 투자대상을 다각화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펀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설정되며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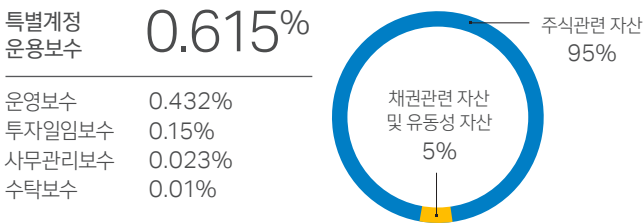
### 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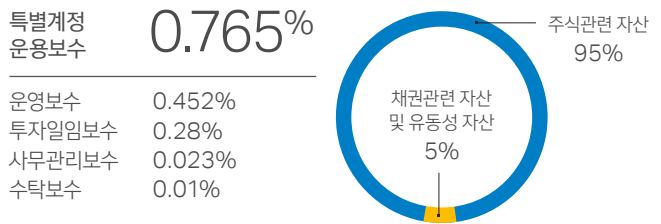
### 단기안정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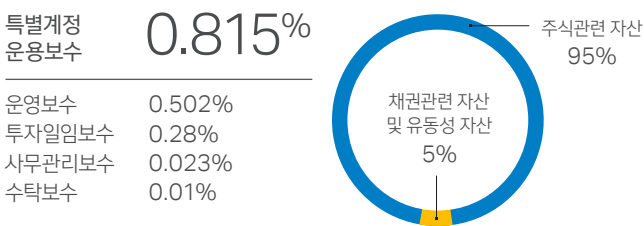
###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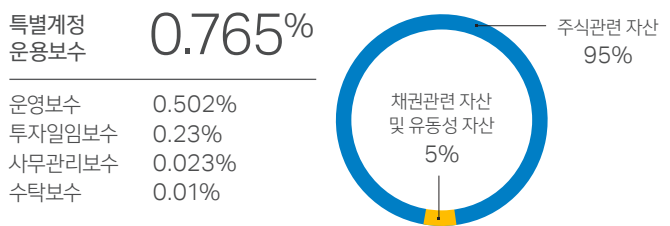
### 롱텀밸류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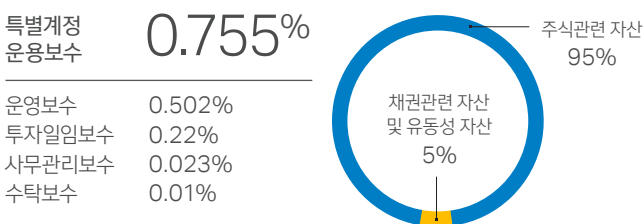
### 액티브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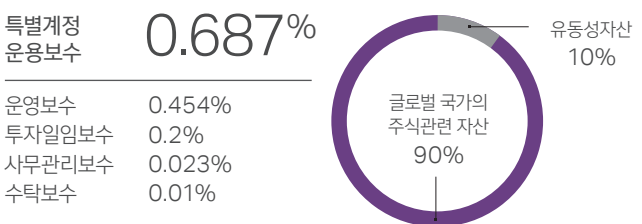
### 배당주식형



### 스마트주식형



### 글로벌주식형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식관련 자산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유동성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 알아두실 사항

## 1.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의 판매자격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 가치는 푸르덴셜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 5.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보험료 자동납부 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 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 (1588-3374, 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0.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11.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 **당신의 삶을** 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1909010-1-2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820호 (2019.09.10)  
인쇄일자. 2019. 10. 01